

##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세부사항(제11조 관련)

### 1. 보수교육

#### 가. 교육기관

- 1)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
- 2)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#### 나. 교육대상

- 1)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자
- 2)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인증기관에 신규 또는 재 종사하려는 자
- 3) 1), 2)의 교육대상자는 연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#### 다. 교육내용

- 1) 친환경 인증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, 법령 및 고시 개정 사항
- 2)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, 인증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·방법 등으로 한다.

#### 라. 교육시간 및 안내

- 1)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2) "가목"의 보수 교육기관은 교육개시 1개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보수교육 시기, 장소 등을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.

#### 마. 교육면제

- 1)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 이수 해당 연도에 한해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- 2) 시행규칙 제31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
#### 바. 기타

- 1)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마친 자는 해당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